방송통신위원회 부패행위 신고 접수·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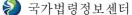


[시행 2015.7.28] [방송통신위원회훈령 제200호, 2015.7.28, 일부개정]

방송통신위원회(행정법무담당관), 02-2110-1324

- **제1조(목적)** 이 훈령은 방송통신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 공직자의 부패행위에 대하여 내부 신고를 장려하고 신고 자의 보호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정의)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 - 1. "부패행위"란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4호 및「방송통신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」에 열거된 행동기준에 위반하는 행위를 말한다.
 - 2. "내부공익신고"(이하 "내부신고"라 한다)란 공직자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여 신고하는 행위를 말한다.
 - 가. 공직자 자신이 부패행위를 한 경우
 - 나. 부패행위를 강요·제의 받은 경우
 - 다. 다른 공직자의 부패행위를 알게 된 경우
- **제3조(적용범위)** 이 규정은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공무원 및 무기계약직 근로자 등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모든 직원(이하 "공직자") 및 공직자의 부패행위를 방송통신위원회, 국민권익위원회, 감사원,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에게 적용한다.
- **제4조(신고의무)** 공직자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부패행위 신고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.
- **제5조(부패행위 신고센터의 설치 등)** ① 내부신고 업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감사담당 업무 부서에 부패행위 신고 센터를 설치 · 운영하며, 감사담당 부서의 장이 책임관이 된다.
 - ② 감사담당 부서의 장은 실무처리에 필요한 사람을 담당자로 지정하여 내부신고 업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.
 - ③ 감사담당 부서의 장은 신고자의 개인정보 등 비밀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내부신고 업무의 일부를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
- **제6조(신고의 방법)** ① 내부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문서 · 전화 · 우편 · 인터넷, 그 밖에 편리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내부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인적사항, 신고대상 · 취지 및 육하원칙에 따른 경위를 명시하여 야 한다. 이 경우, 부패행위 등의 증거자료를 함께 제시할 수 있다.
 -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현재 진행중인 부패행위 등 긴급한 경우에는 사실관계만 신고하고 추후에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다.
- **제7조(신고의 처리)** ① 감사담당 부서의 장은 제6조의 내부신고를 접수한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내부신고 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재한 후 처리하고,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외부 부패행위 신고 시스템을 통해 접수된 신고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 - ② 감사담당 부서의 장은 신고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상담이 필요하거나 신고자가 상담을 원하면 비밀이 유지되는 장소에서 신고자와 상담할 수 있다.
 - ③ 감사담당 부서의 장은 신고사항이 접수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하며, 보완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 - ④ 감사담당 부서의 장은 신고사항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범위에서 신고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 - ⑤ 감사담당 부서의 장은 신고사항 중 공직자의 부패행위와 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기관에 이첩할 수 있다.
 - ⑥ 감사담당 부서의 장은 신고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하지 아니하고 종결할 수 있다. 다만, 이 경우에도 신고인에게 조치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.
 - 1. 신고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
 - 2. 신고자가 제4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신고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





- 3. 같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하여 신고를 한 경우로서 그 처리결과를 이미 통지한 경우
- 4. 같은 사항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각각 신고를 하고 먼저 접수된 신고에 관하여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종료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
- 5. 그 밖에 신고서의 기재 사항과 신고자에 대한 확인 결과 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- ⑦ 감사담당 부서의 장은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 결과「방송통신위원회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고발 지침」에 따라 고발대상이 되는 부패행위에 대해서는 관할 수사기관에 부패행위자 및 부패행위 사항에 대해 고발 조치할 수 있다.
- ⑧ 감사담당 부서의 장은 조사과정에서 신고자 등이나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신고 등을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당 신고와 관련한 조사절차에서 「특정범죄신고 자 등 보호법」제7조(인적 사항의 기재생략) 및 제9조(신원관리 카드의 열람) 내지 12조(소송진행의 협의등) 의 규정을 준용하되,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 등에 신고자의 신변보호조치를 협조 요청하여야 한다.
- 제8조(비밀보장) ① 공직자 등 누구라도 이 규정에 따른 신고자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그 인적사항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암시하거나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.
 - ② 감사담당 부서의 장은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징계권자에게 징계 등을 요구할 수 있다.
- 제9조(신분보장) ① 공직자는 이 훈령에 따른 신고 · 진술 · 자료제출 등을 한 이유로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 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.
 - ② 공직자는 이 훈령에 따른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 조건상의 차별을 당하였거나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감사담당 부서의 장에게 해당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 · 전직 · 징계의 보류 등 신분보장조치와 그 밖의 필요한 조치(이하 "신분 보장조치" 등이라 한다.)를 요구할 수 있다.
 - ③ 제2항에 따른 신분보장조치 등을 요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감사담당 부서의 장에게 그 인적사항, 요구사유 및 요구내용 등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.
 - ④ 감사담당 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요구가 있는 경우 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.
 - ⑤ 감사담당 부서의 장은 징계권자에게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처분을 한 사람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, 제4항에 따른 조사결과 요구된 내용이 타당한 경우에는 인사권자 등에 대하여 원상회복 등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여야 하며, 요구를 받은 인사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
 - ⑥ 제5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징계권자 또는 인사권자는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조치결과를 감사 담당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, 해당 요구사항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.
- 제9조의2(신변 보호) 감사담당 부서의 장은 신고자가 신고를 한 이유로 그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불 안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자 등으로 하여금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.
- **제10조(협조자 보호)** 이 훈령에 따른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,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 조사에 협조한 자(이하 '협조자'라 한다)에 대하여는 제8조, 제9조 및 제9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.
- 제11조(불이익의 추정 등) ① 신고자가 불이익조치 등의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원상회복 등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 해당 신고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당한 것으로 추정한다.
 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자 또는 협조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훈령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.
 - 1.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거짓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
 - 2. 피신고자를 음해할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
 - 3.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협조자가 거짓된 진술을 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한 경우
- 제12조(책임의 감면 등) ① 이 훈령에 따른 신고를 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신고자의 부패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.
 - ② 이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.
- 제13조(포상 실시 등) ① 방송통신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「상훈법」 등의 규정에 따라 신고자에 대한 포상을 추천할 수 있으며,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.
 - 1. 이 훈령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확인된 부패행위자에 대해 공소제기· 기소유예 · 기소중지 또는 견책 이상 의 징계처분 등이 있는 경우

- 2. 이 훈령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신고와 관련된 정책 등의 개선 · 중단 또는 종료 등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한 경우
- 3. 그 밖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방송통신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
-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사유가 둘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 액수가 많은 것을 기준으로 한다.

제14조(포상금의 지급 제한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

- 1. 이미 신고된 사항이거나 감사담당 부서 또는 외부기관 등에서 인지하여 조사 또는 징계절차 등이 진행 중이 거나 완료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
- 2. 신고 전 이미 언론보도 등에 의해 공개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
- 3.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하여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
- 4. 감사담당 공직자가 신고한 경우
- 5. 신고자가 포상금 지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
- 6. 본인의 부패행위를 자진신고한 경우
- 7. 그 밖에 포상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- ② 감사담당 부서의 장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 받은 자가 포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님이 밝혀진 때에는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.
- 제15조(재검토 기한) 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(대통령훈령 제248호)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,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9월 30일까지로 한다.

부칙 <제200호, 2015.7.28>

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